

국립환경과학원



수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제조·수입·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 (경유)

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표시광고 제한사항에 대한 안내

- 1.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및 승인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귀 사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- 2. 우리원에서는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이하 '화학제품안전법')」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(이하 '동 제품')을 승인제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.
- 3. 위와 관련, 동 제품 표시·광고의 준수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('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규정(환경부 고시)')이 <u>'23년 7월 29일부터 시행</u>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가. 안내대상 :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제조·수입·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나. 안내방법 : 화학제품관리시스템(https://chemp.me.go.kr) 공지

붙임 : 표시 · 광고 제한사항에 대한 안내문 1부. 끝.

국립환경과학원장

현구관 승진예 전결 2023. 7. 13. 환경연구사 **장지영** 정자 **황문영 박경화**

협조자

시행 화학물질연구과-3809 접수

우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국립환경과학원 / http://www.nier.go.kr

전화번호 032-560-7191 팩스번호 032-568-2039 /jang191111@me.go.kr / 비공개(5)